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89
----------	-------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 의 자 : 서영석 · 김주영 · 백종헌
장종태 · 권칠승 · 백혜련
조계원 · 황운하 · 전용기
이원택 · 서미화 · 이해식
이학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장애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범죄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신고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그 기관장,”을 “그 기관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

원과 그 기관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제3항”을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그 기관장,”을 “그 기관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과 그 기관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7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64조 중 “그 직원”을 “그 직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1조(현장출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신고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u>
④ <u>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⑤ <u>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u>

⑤ (생략)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략)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4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

그 기관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직원과 그 기관장,-----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
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직원이나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③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7 –

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죄) ① -----

-----그 기관장, 장애인권
익옹호기관의 직원과 그 기관
장,-----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7
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
인권익옹호기관-----

3의2. ~ 6. (생략) ② (생략)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u>그 직원</u>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 -----<u>그 직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직원</u>----- ----- ----- ----- -----.
---	---